

##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심사보고

###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9. 4 화 순 군 수
- 나. 회 부 일 자 : '96. 9. 6
- 다. 상 정 일 자 : '96. 9. 17(제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 안 자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 나. 제 안 이 유
  - 군내에 소재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함.
- 다.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에 소재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간이상수도의 정비계획 수립(안 제3조)
    - 관리자(군수)는 수시 또는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 간이상수도의 위탁관리(안 제6조)
    - 관리자는 당해 읍면장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협의회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
  - 간이상수도 보호시설의 설치(안 제7조)
    -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 자물쇠장치 등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보호
  - 간이상수도의 유지보수(안 제9조)
    -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 지역 등에 대한 개. 보수를 우선적으로 실시

○ 요금징수 (안 제11조)

-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화순 군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범위내에서 징수

○ 계량기의 설치 (안 제12조)

- 필요한 경우 가구별 계량기 설치 가능

○ 사용자 협의회 구성 (안 제13조)

-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

○ 사용자 협의회 기능 (안 제16조)

-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들에게 통보
-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재휴)

- 동 조례제정안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부터 간이상수도관리에 따른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 요지

" 생 략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9.

제출자 : 화순군수

## 1. 제안이유

우리군에 소재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개정근거

- 수도법 제32조

## 3. 주요골자

- 유지보수(안 제9조)
  - 관리자인 군수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나 경미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해결한다.
- 요금징수(안 제11조)
  -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장 및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고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사용자 대표협의회(안 제13조)
  -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 제 2 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당해 읍면장 및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관리자는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 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읍면장 또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 또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관련된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등 경미한 사항은 사용자나 협의회에서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요    금    징    수

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3조 (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구성) ① 협의회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당해 읍면장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읍면장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17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양식 (제4조 제2항 관련)

관 리 번 호	시(군) 계 호																	
구 분	항 목																	
일반 현황	내 역																	
위 치	도	시.군 읍.면 리																
관리위원장	성 명	전화번호 ( ) - -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 주자역 (만원)	구 분	내 역	일 가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민부담	기 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 개량																
		1차																
		2차																
		3차																
수원 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의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																
위수 시설	보유 시설	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																
		시설 내역	구 분	계	원	시설 상태	특 기 사 항											
		집수정 1				양 호	불 량	심도: m										
		집수정 2						심도: m										
		양수모터 1						마력										
		양수모터 2						마력										
	정수 시설	보유 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															
			시설 내역	구 분	계	원	시설 상태	특 기 사 항										
			소독설비				양 호	불 량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 종 별 총 연 장 (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소	계															
		소	계															
	총	계																
급수 현황	제 획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현 재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제한 급수	1차: ' . . . - . . .	2차: ' . . . - . . .	3차: ' . . . - . . .	제: 일간													
수질 검사	검사 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권	검사기관	( 개항목)												
	합격 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 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수원 이전	이전 사유		이전 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 위치																	

[별지 제2호 서식]

# 간이상수도정기점검일지양식

(제5조 제1항 관련)

관리번호	화순군 제 호	점검일자 : 19 . . .			
조사 및 확인항목		검사월		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월	일	특기사항	조치결과
시설의 청 소	소독기				
	취수원				
	배수지				
	침전지				
	여과지				
	관로파손				
오염원 제 거	취수원 근				
	배수지 근				
<p>주 1 : 수질검사 결과 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 3개월마다 실시</p>					<p>담당자</p>



[별지 제3호 서식]

## 간이상수도수시점검대장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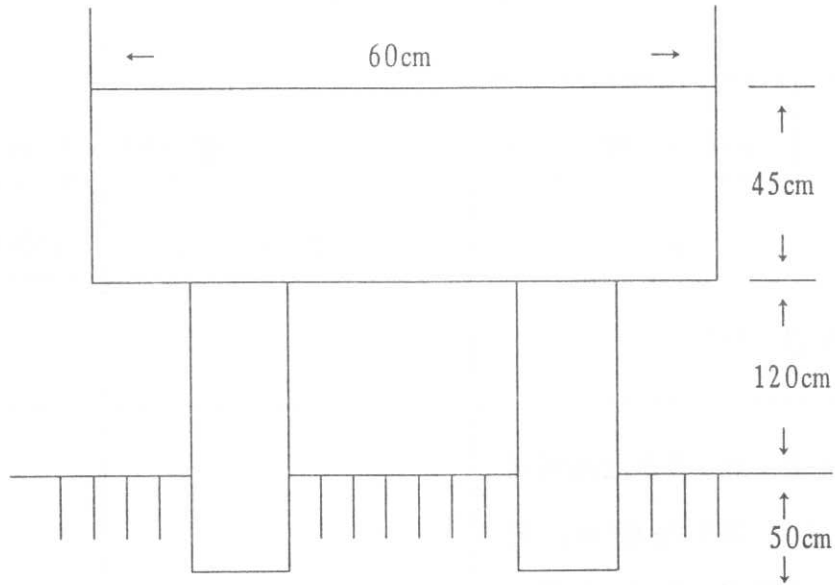
(제5조 제2항 관련)

관리번호	화순군 제 호	점검일자 : 19 . . .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점검자	확인자	
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 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 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 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여부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7. 기타 조치사항				

[별표 제1호]

# 간 이 상 수 도 안 내 판

(제7조 제1항 관련)



- 재질 및 두께 : 10mm 내외의 합판
- 바 탕 색 : 흰 색
- 글 씨 : 청 색

## [내 용 문]

1. 이곳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화순군 환경보호과 (Tel : 73 - 2002)

○○읍.면 (Tel : 000 - 0000)